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7 호

2016년11월21일(월)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6-306호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호스텔) 도로연접기준완화 지역 지정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6-201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울촌제1산단~울촌면소재지 간 도로개설공사) /31
- 여수시 공고 제2016-2035호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공고 /33
- 여수시 공고 제2016-2036호 식품위생법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허가 취소)공고 /34
- 여수시 공고 제2016-2043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용주리 492] /35

회 판									
--------	--	--	--	--	--	--	--	--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도로연접기준완화 지역 고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입지 시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여 수 시 장

1. 명 칭 : 관광숙박업(호스텔업) 도로연접기준완화 지역 고시
2. 관할 지자체 : 여수시
3. 도로연접기준 완화 적용 대상

고시일 기준 도로연접완화 지역 내 기존 건축물 중 용도변경, 증축, 재축, 대수선을 통한 관광숙박업(호스텔) - 신축 제외

3. 지정범위 및 면적

(단위 : m²)

법정동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 고
5개 읍면동	171,476.90	31,321	-	
비율	1.37%	0.30%	-	주거지별 전체면적 대비
(적용지역) 돌산, 덕충, 만흥, 오천, 신덕동 일부지역				

※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행위를 별도 제한하거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이 변경 될 경우 호스텔 입지기준 완화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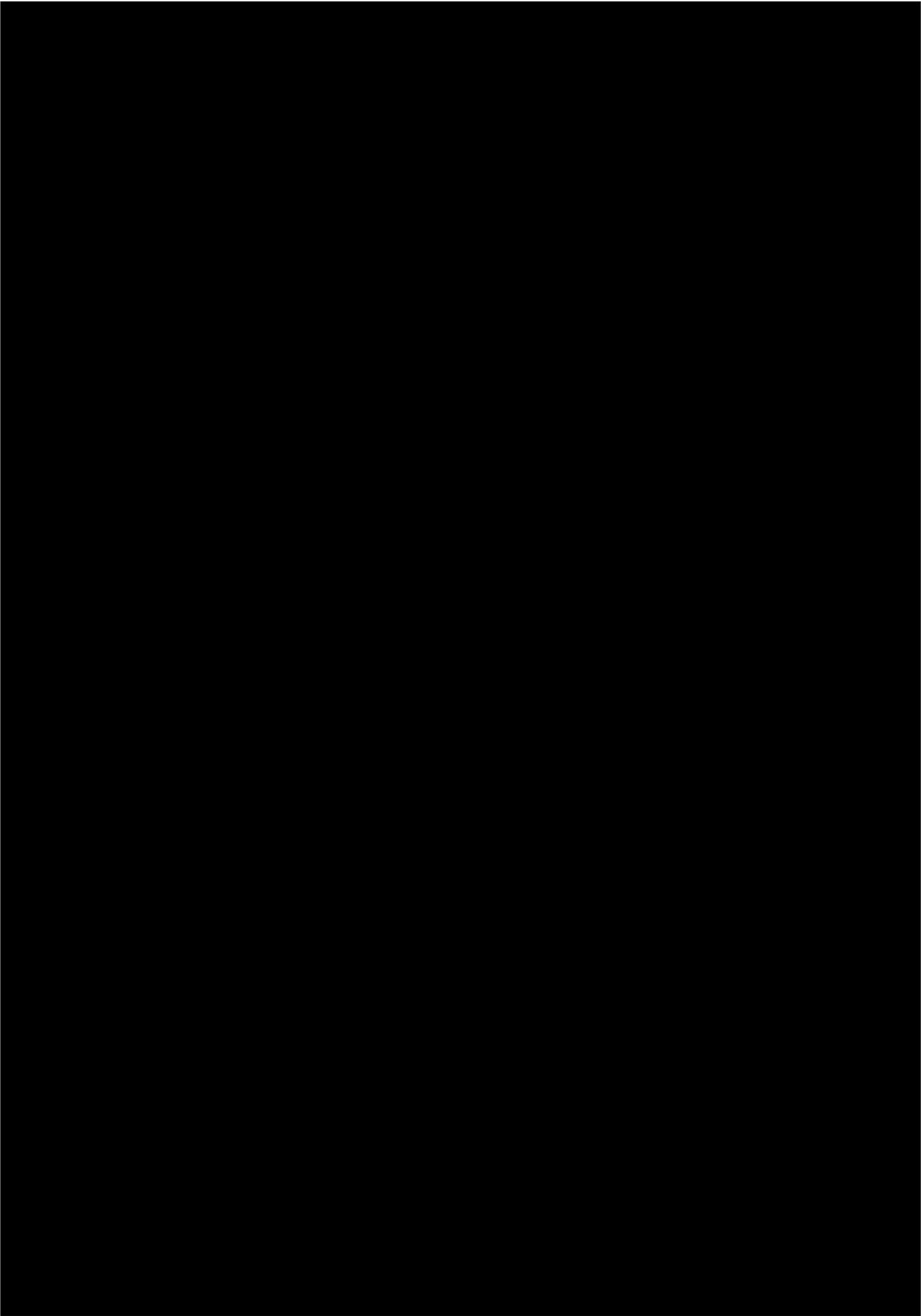
4. 지정구역 도면 : 토지조서 고시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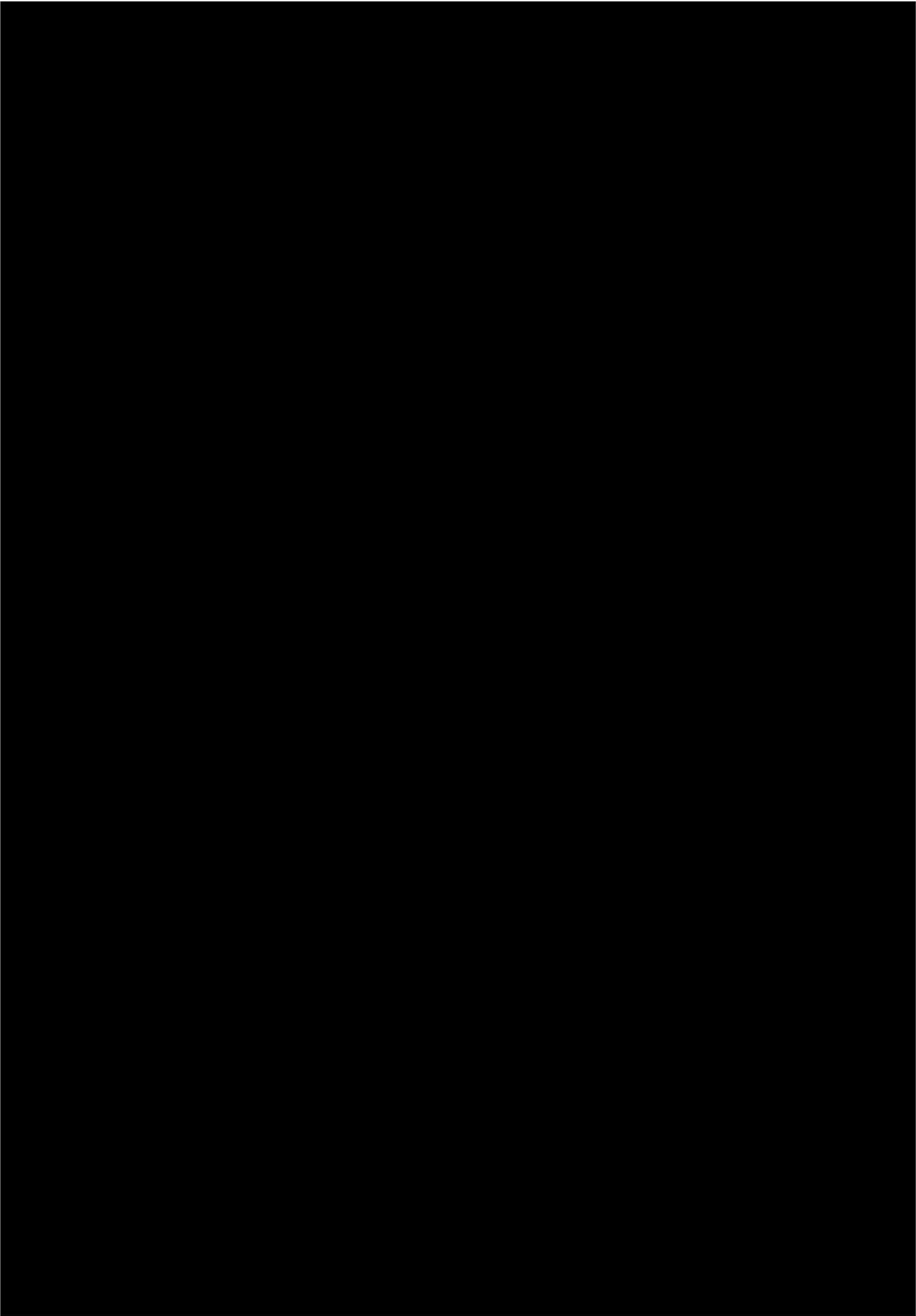
5. 주거지역 내 도로연접기준 완화지역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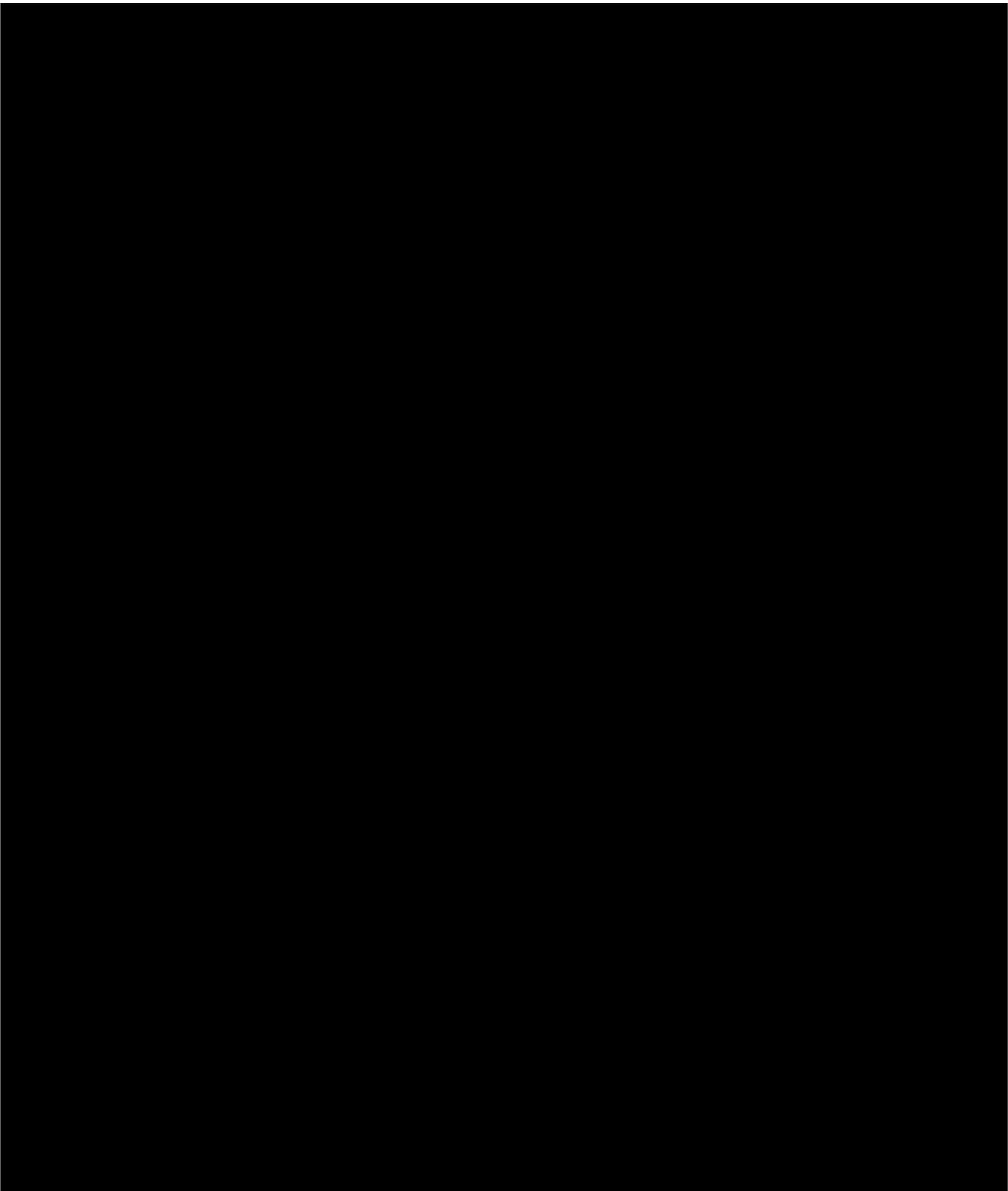
법정동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비고
계(5)	171,476.9	31,321	-	
돌산읍	41,608.90		-	
덕충동	2,409.0		-	
만흥동		31,321	-	
오천동	58,369.0		-	
신덕동	69,090.0		-	
“세부내역(토지조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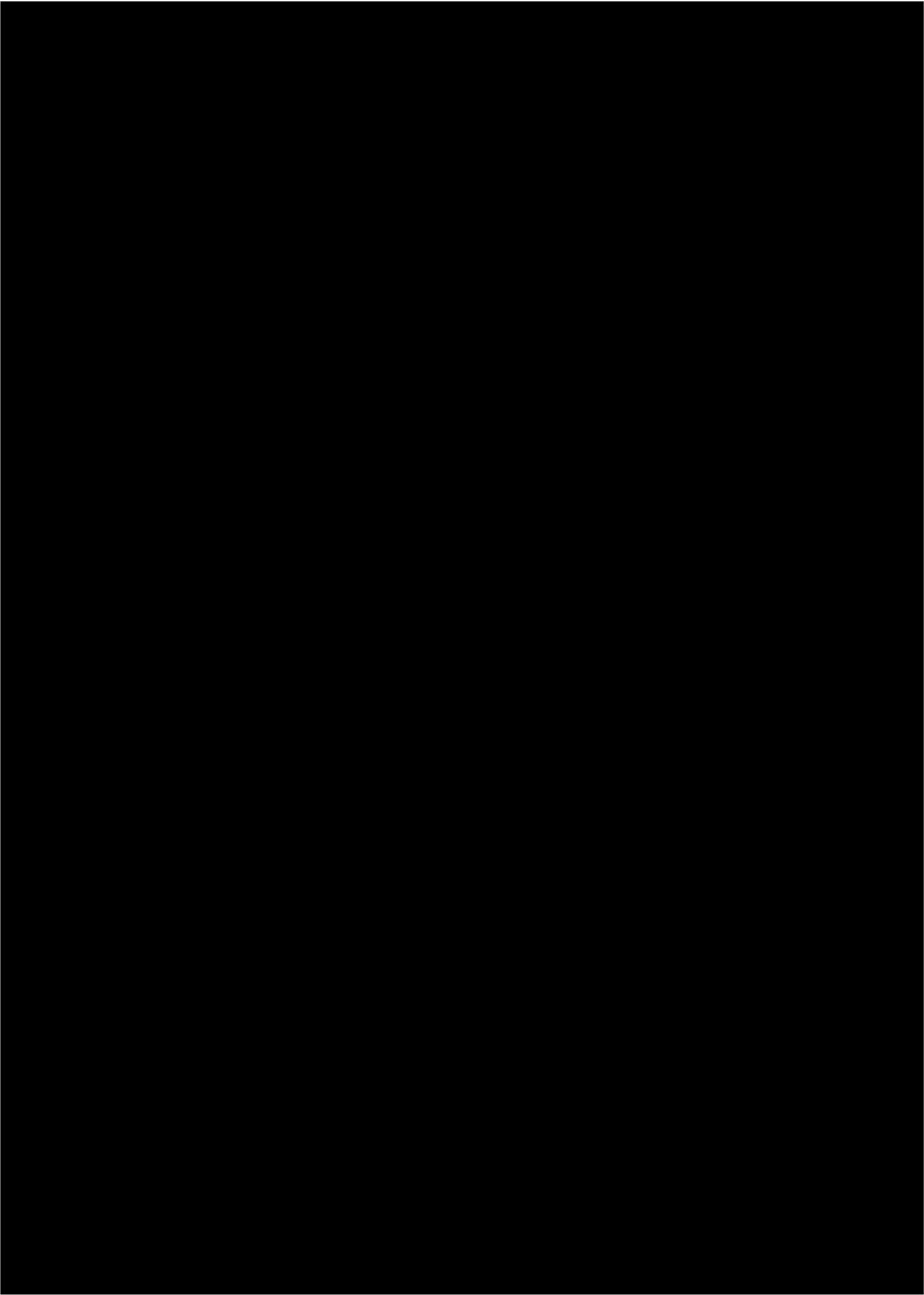
6. 시행일 : 고시일로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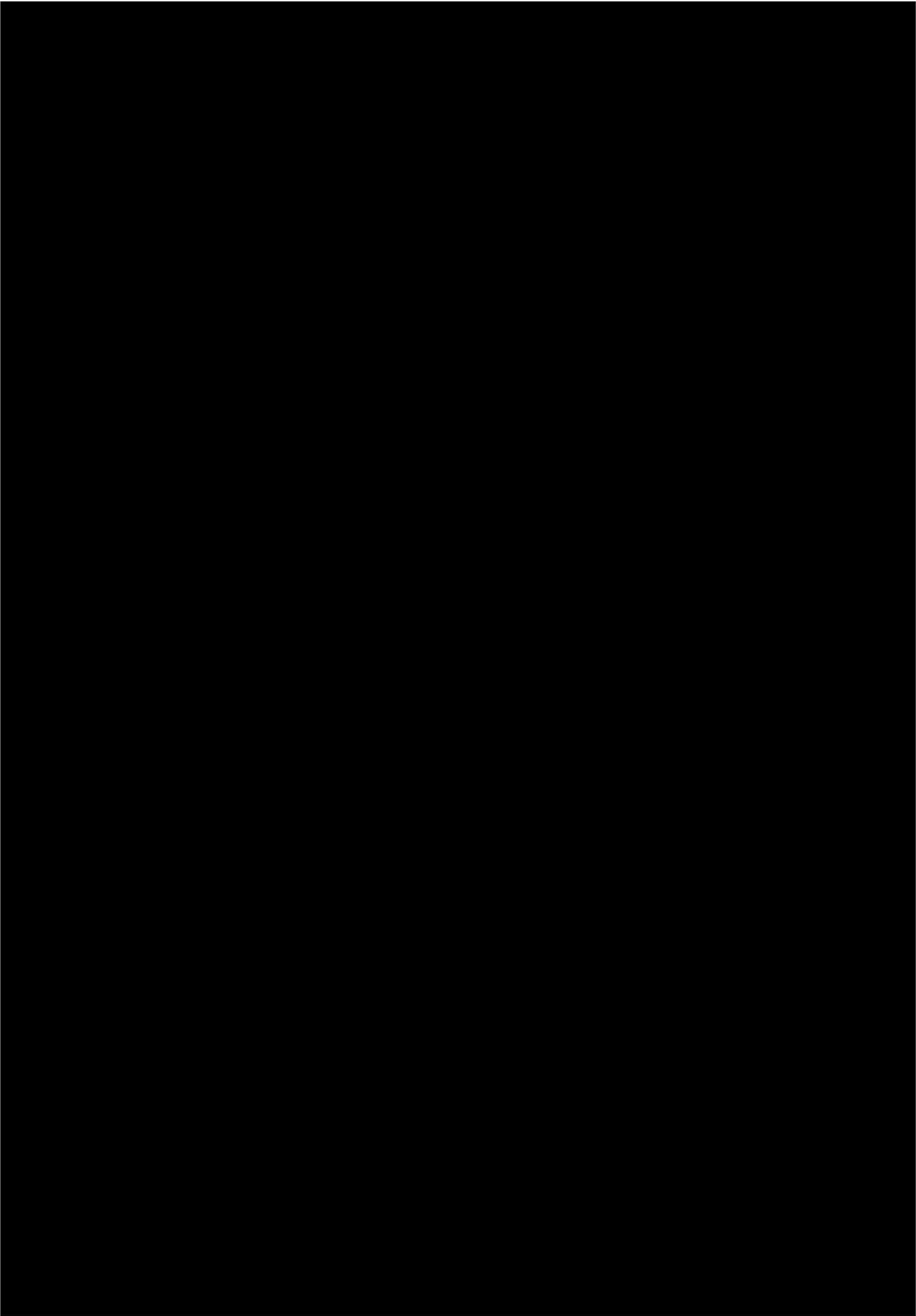
7. 기타 : 주거지역내 호스텔업 도로연접기준완화 적용 등 세부내용은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659-3881)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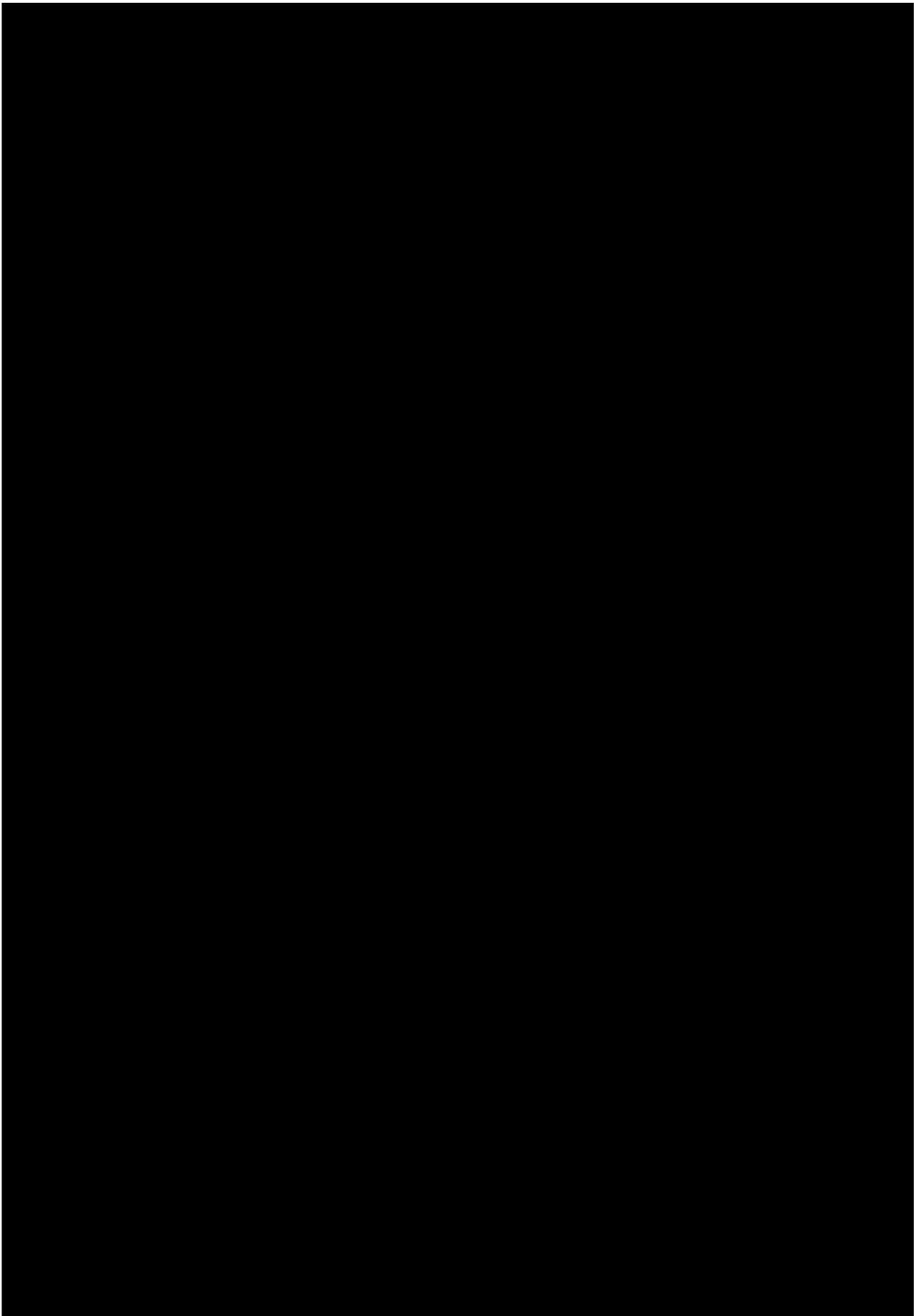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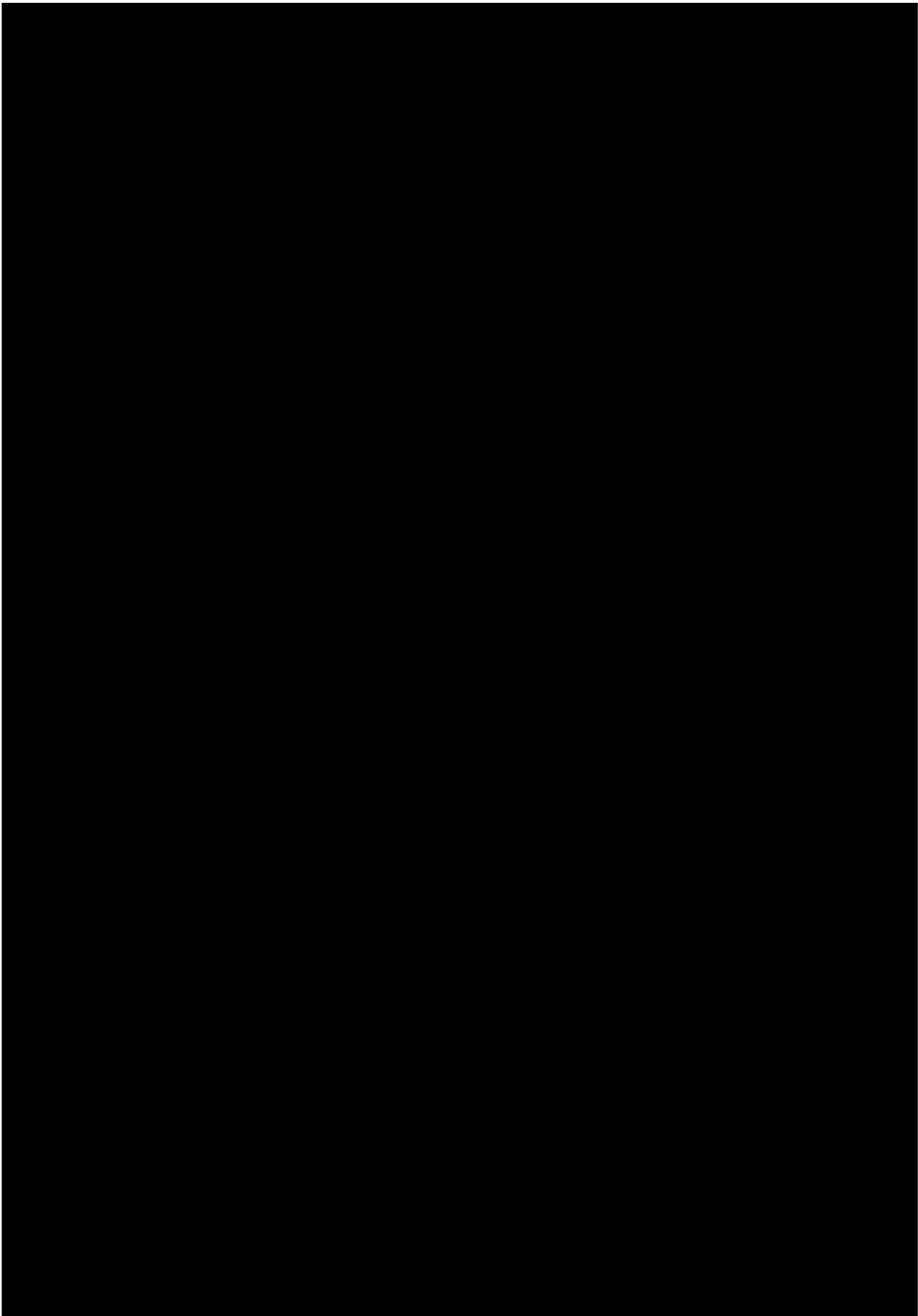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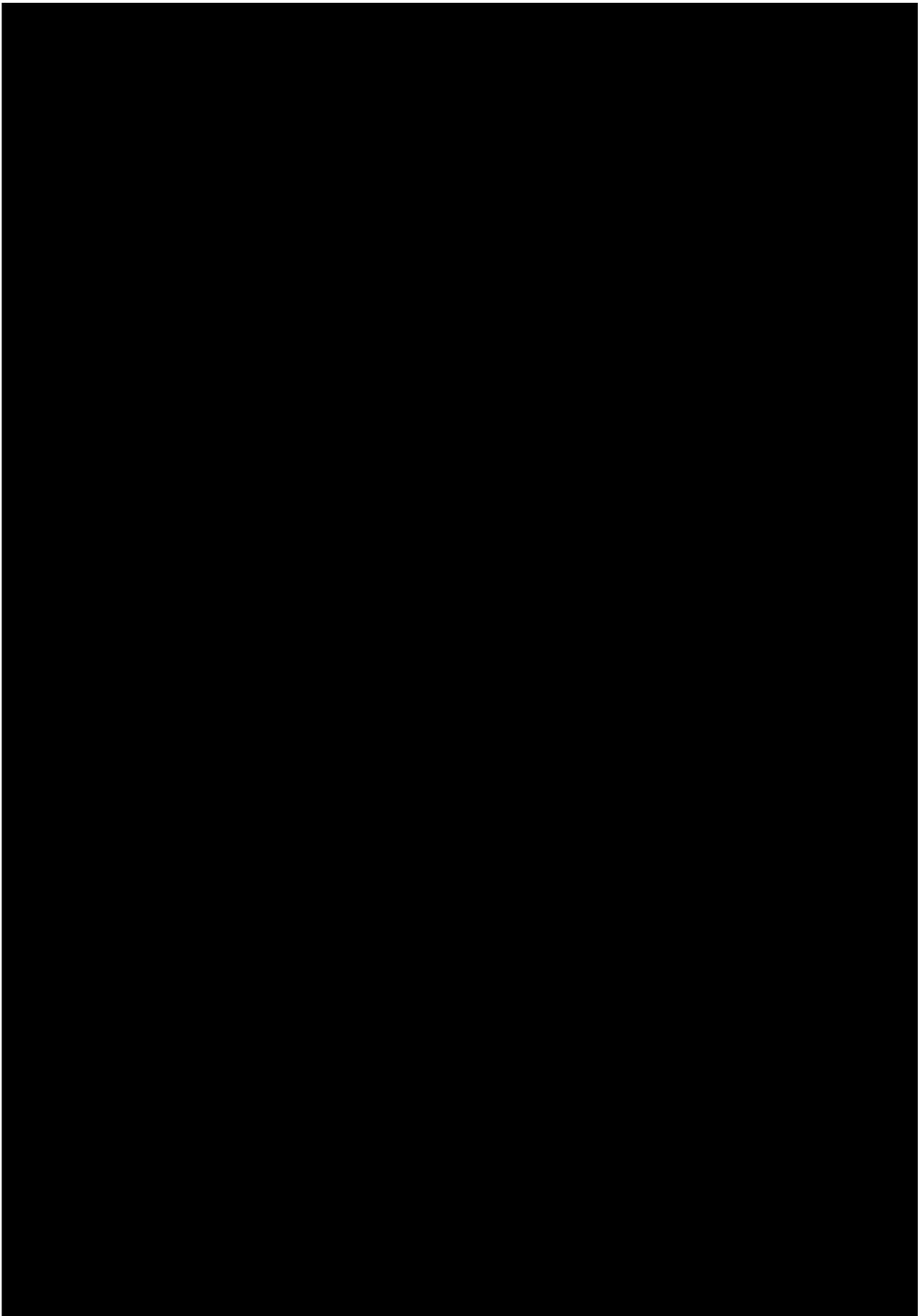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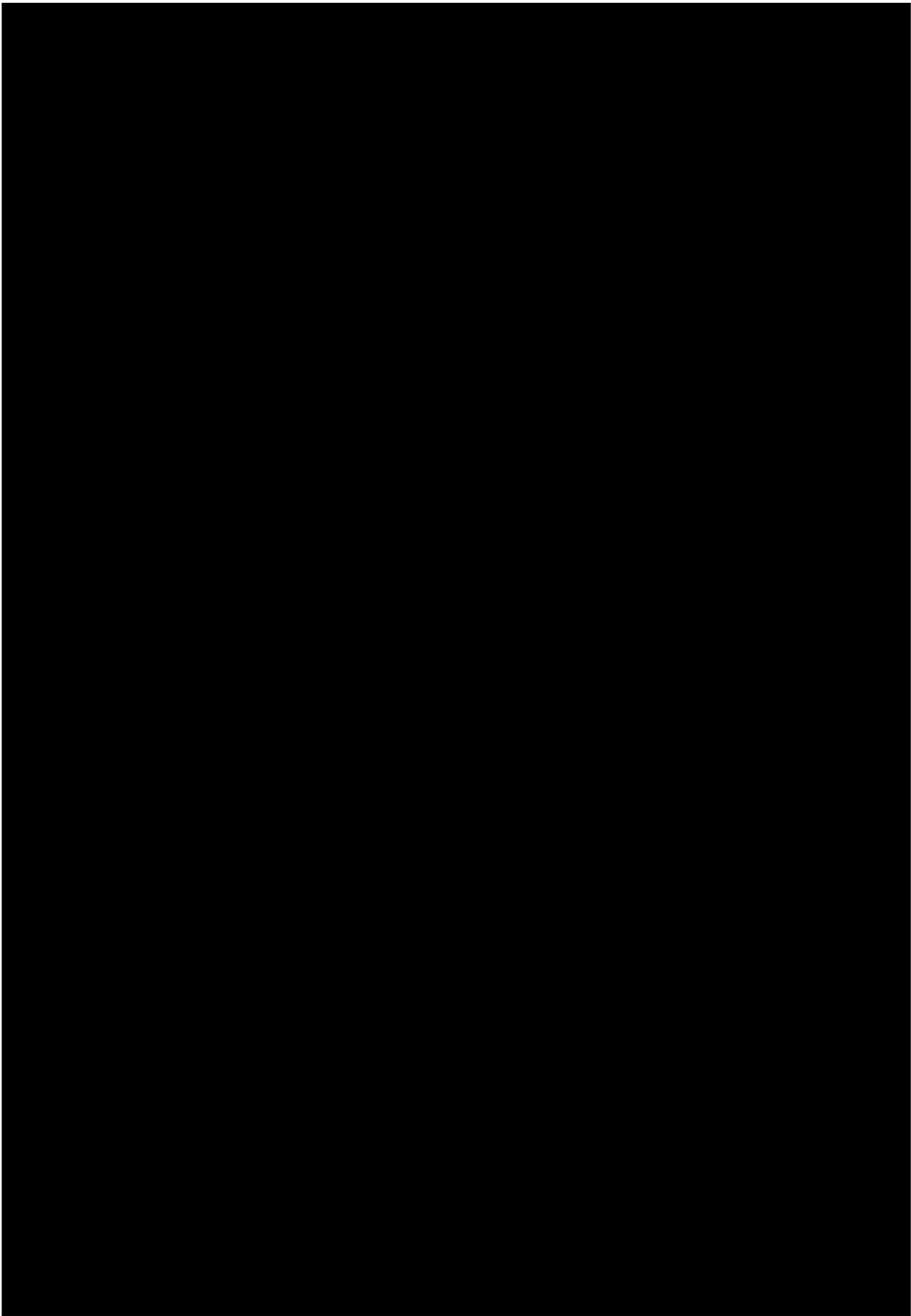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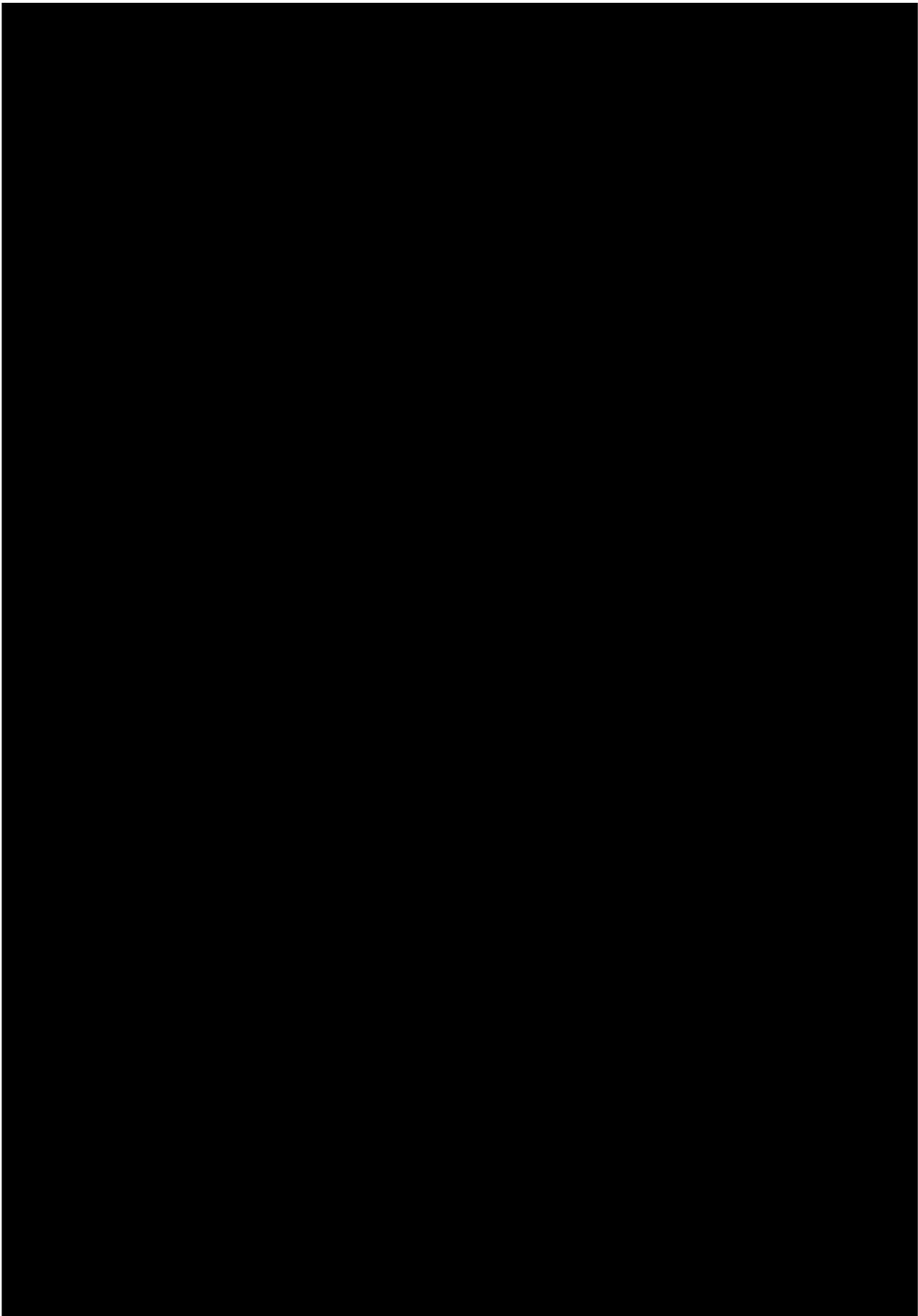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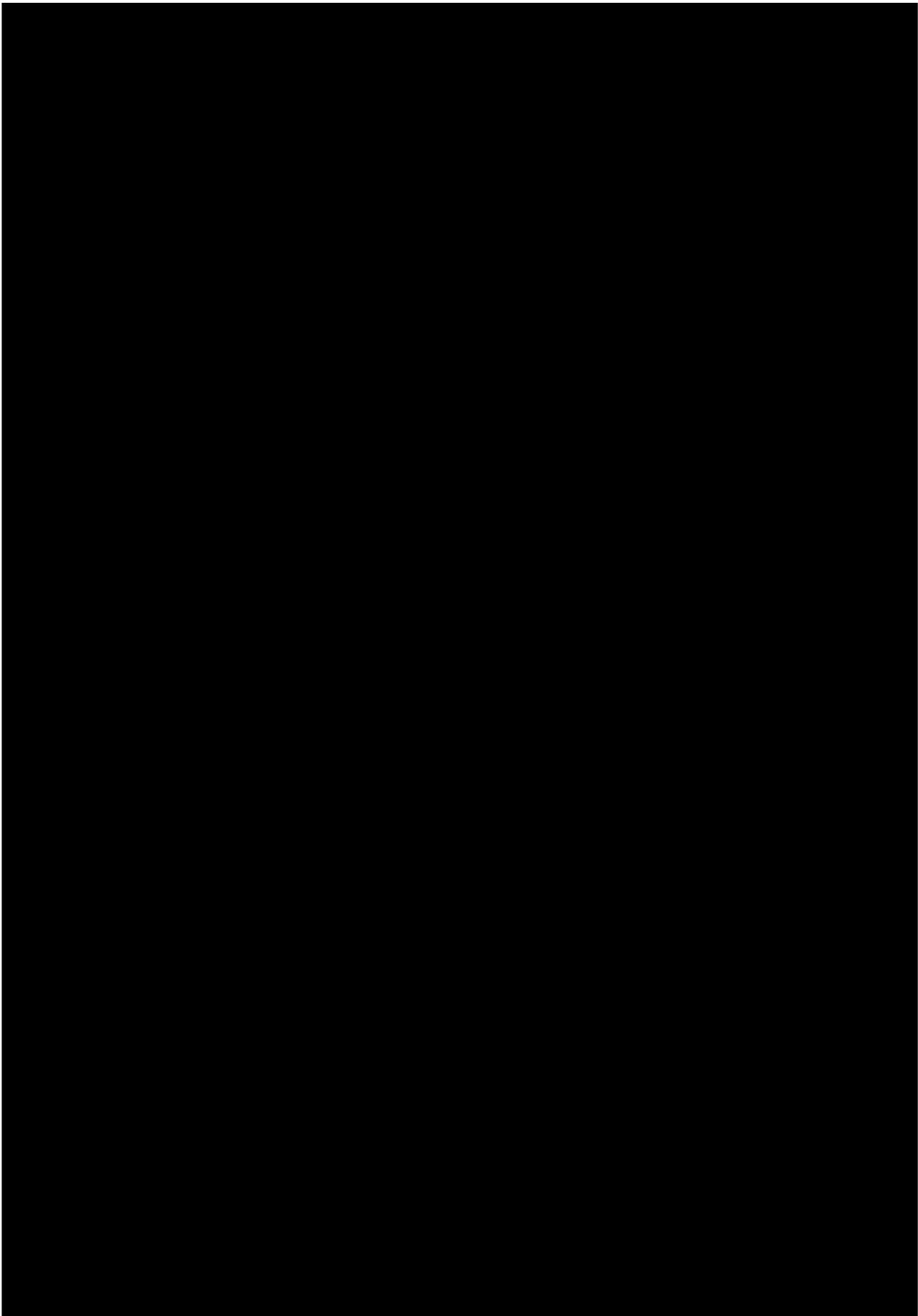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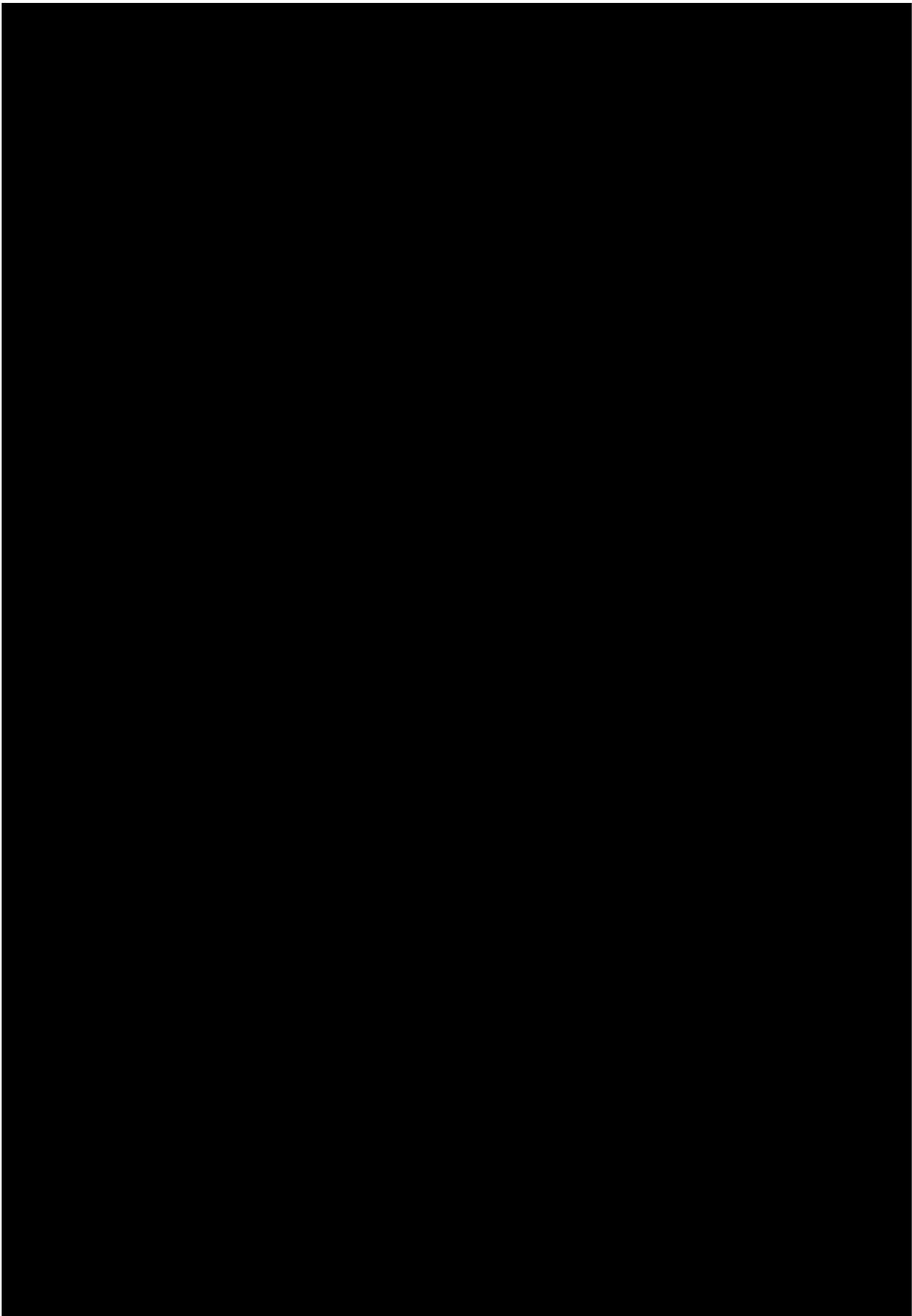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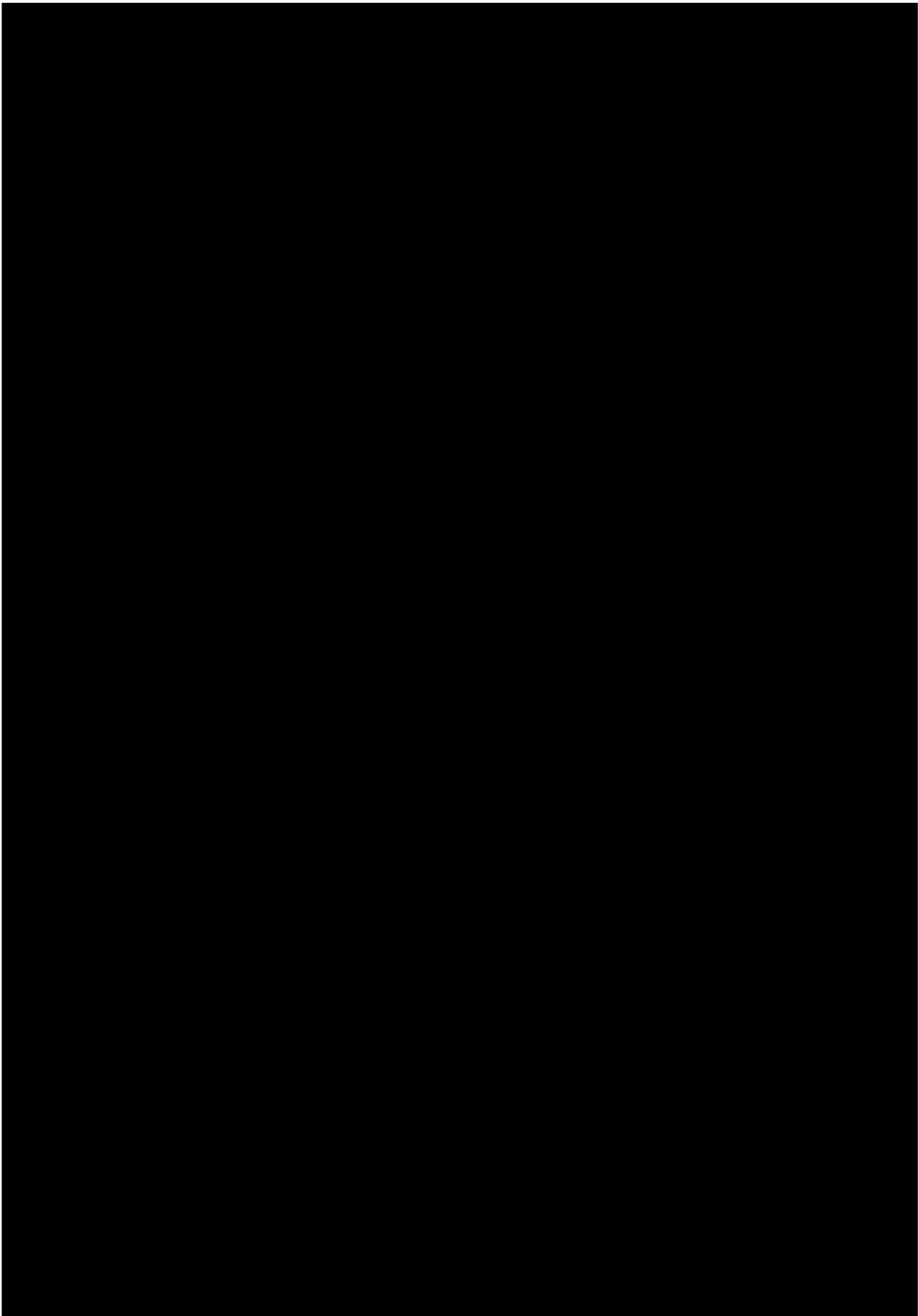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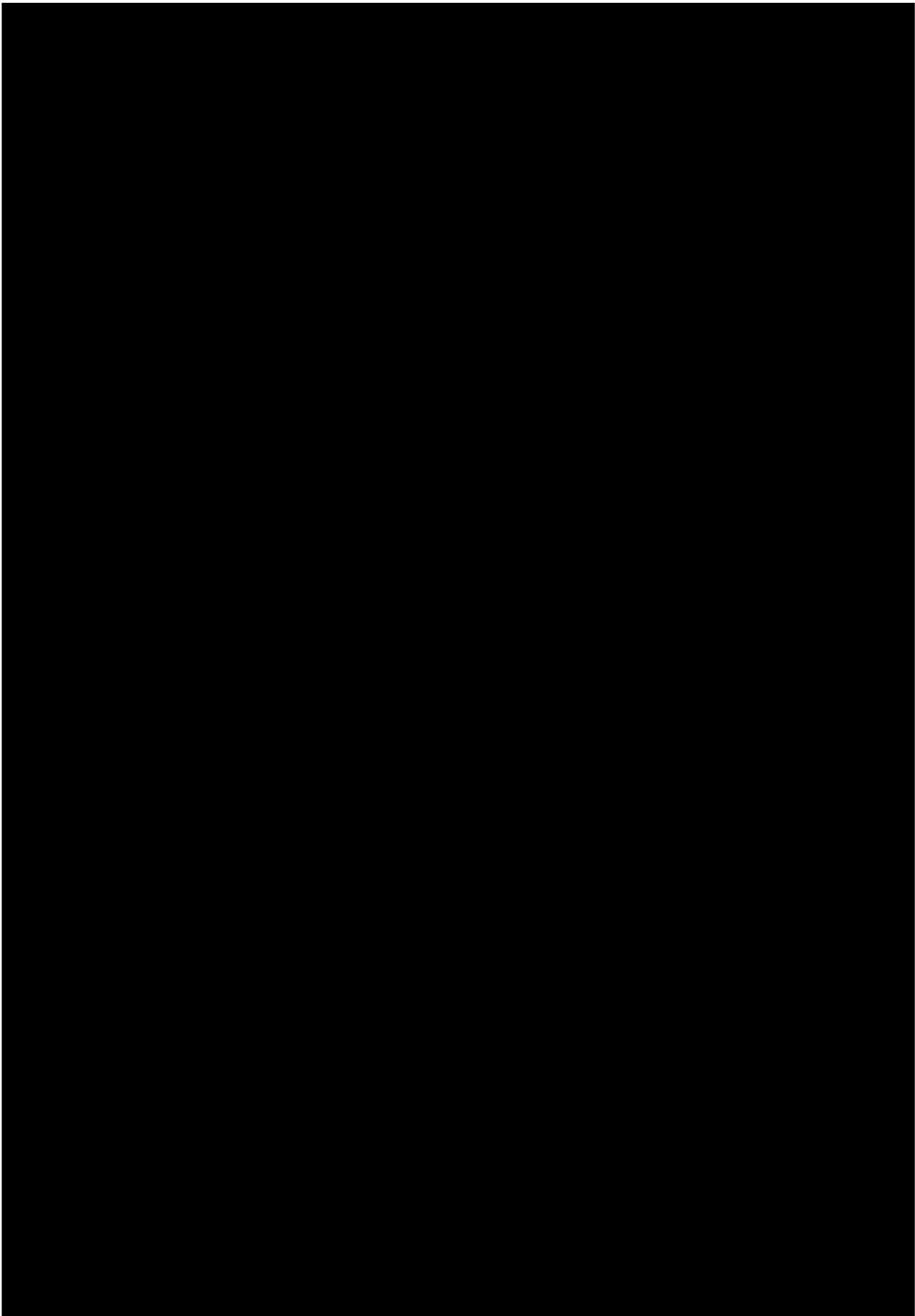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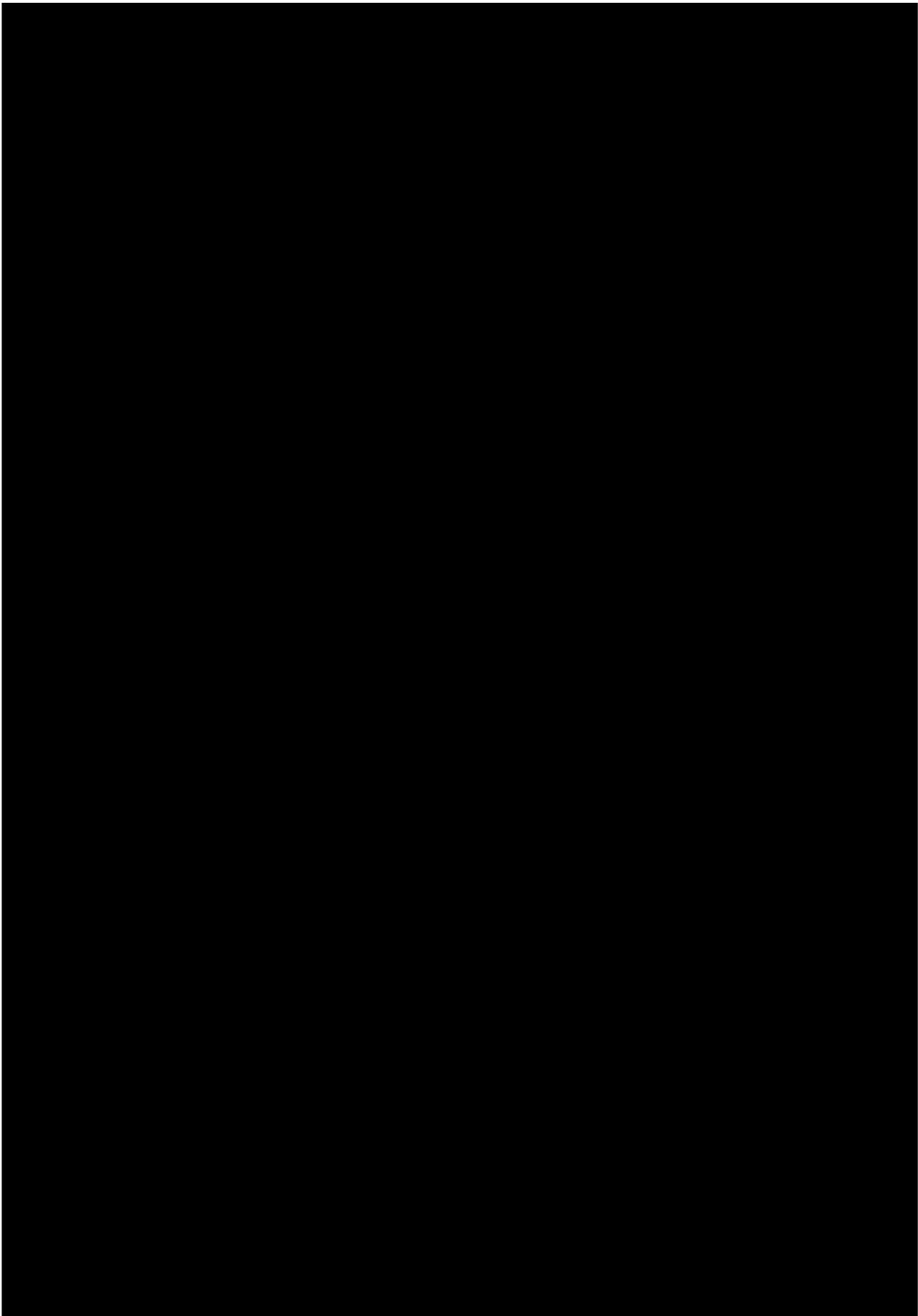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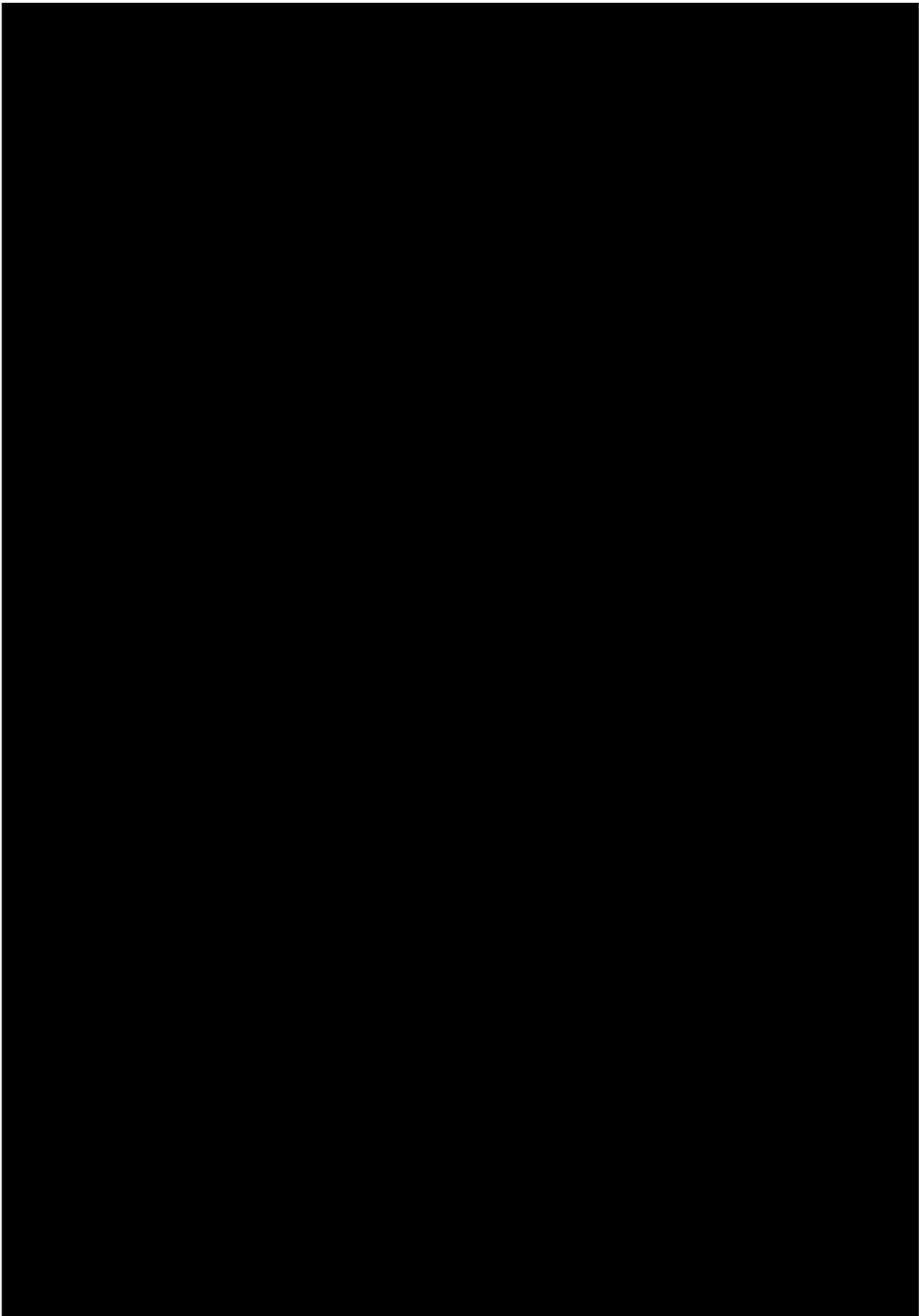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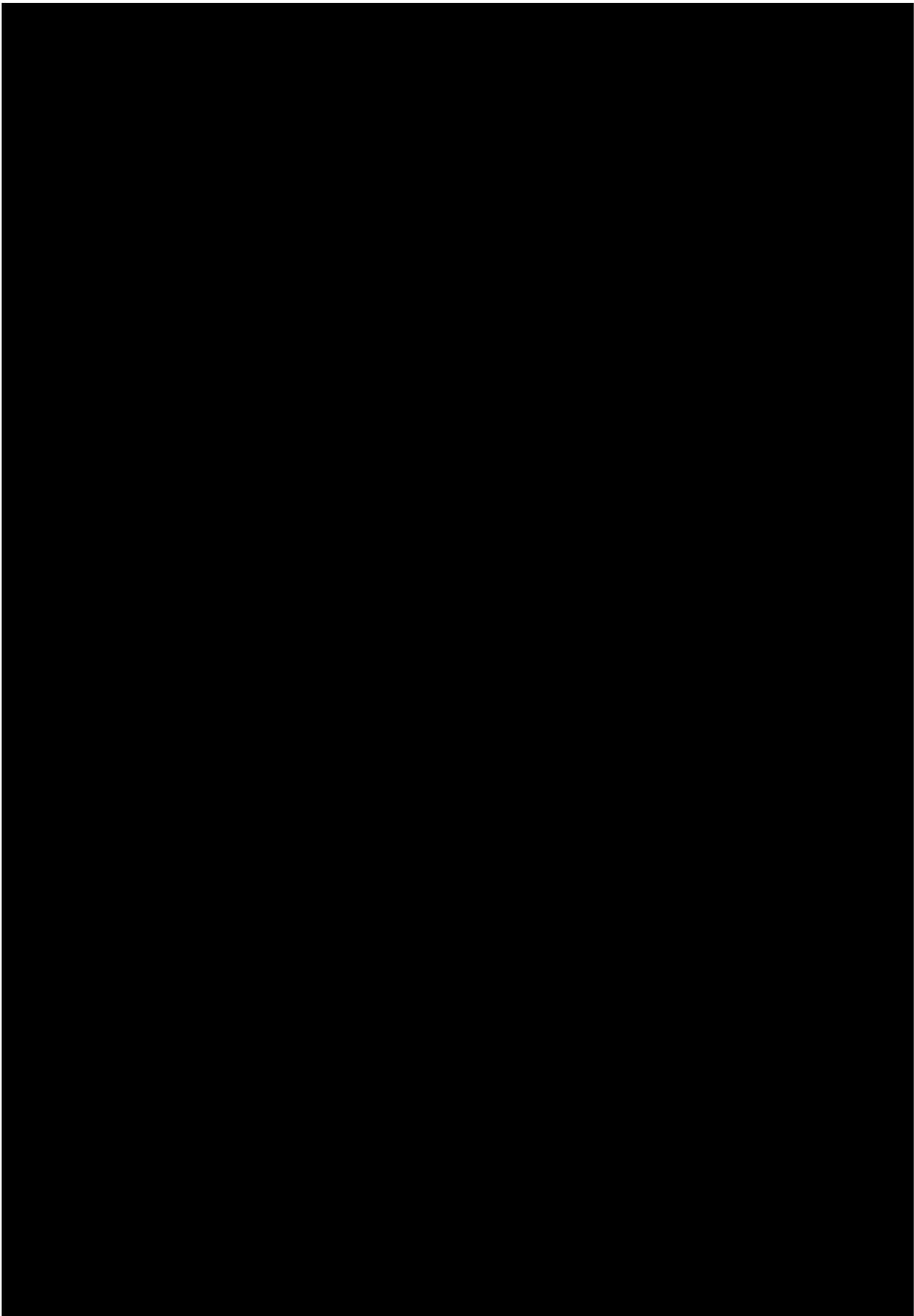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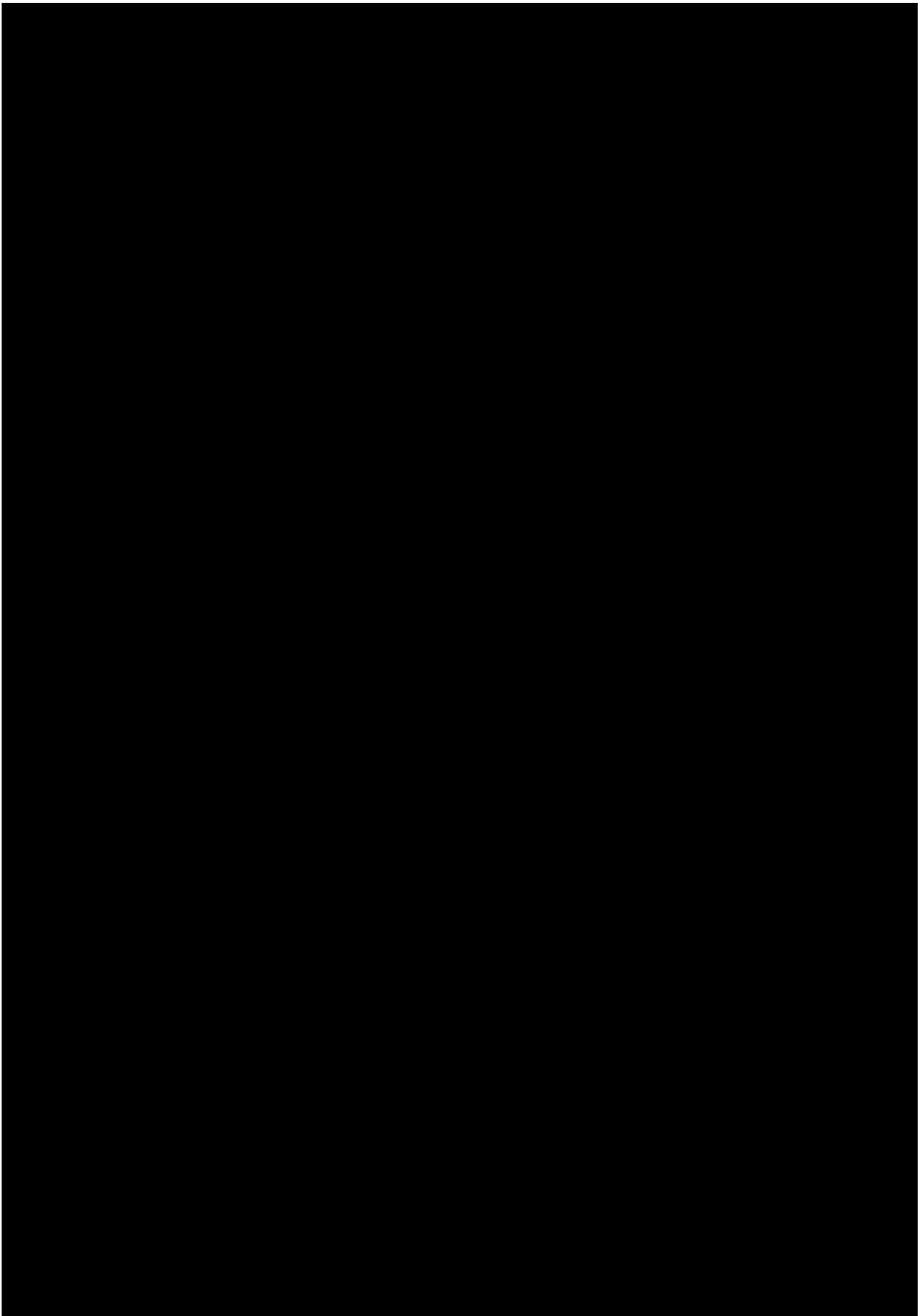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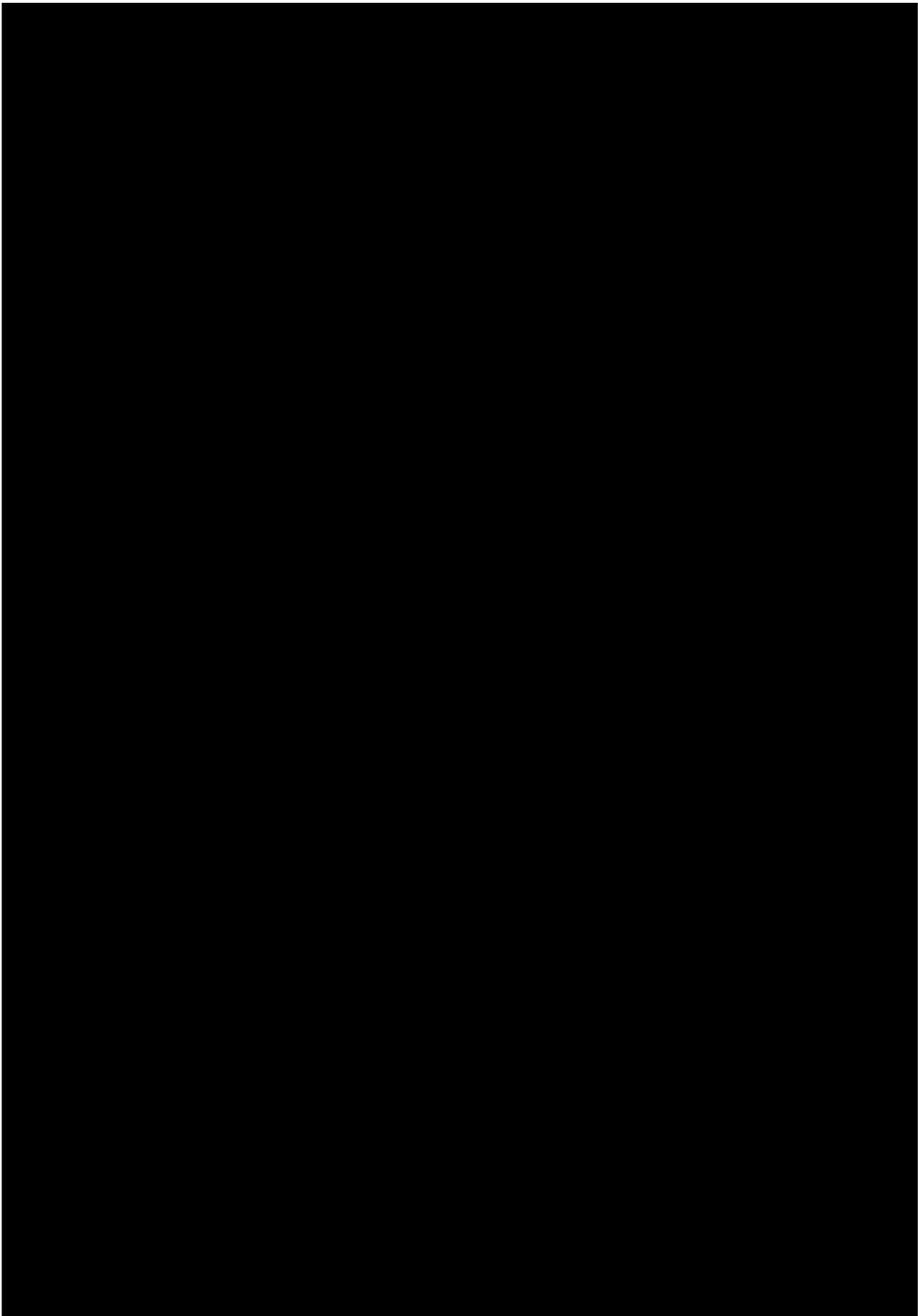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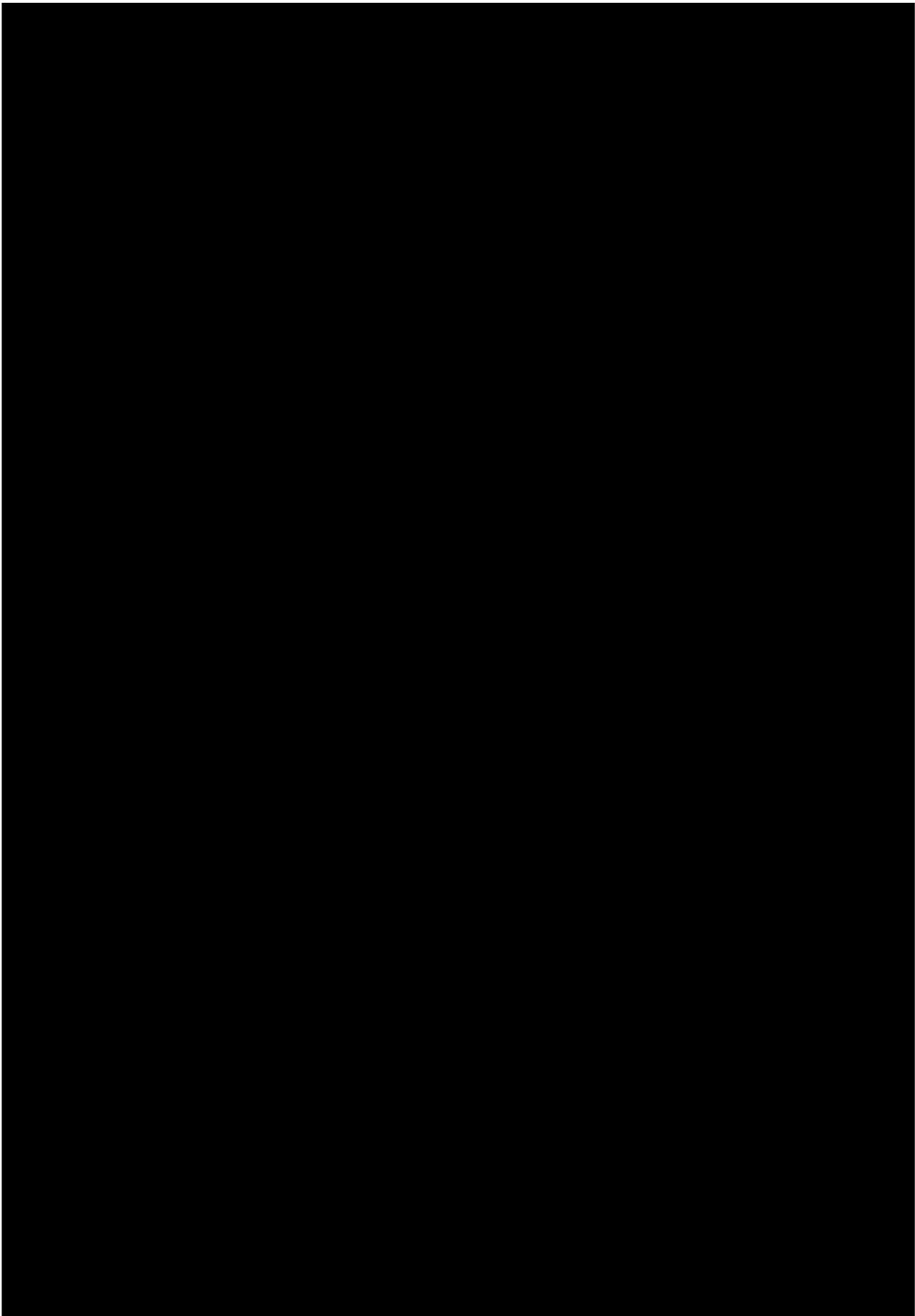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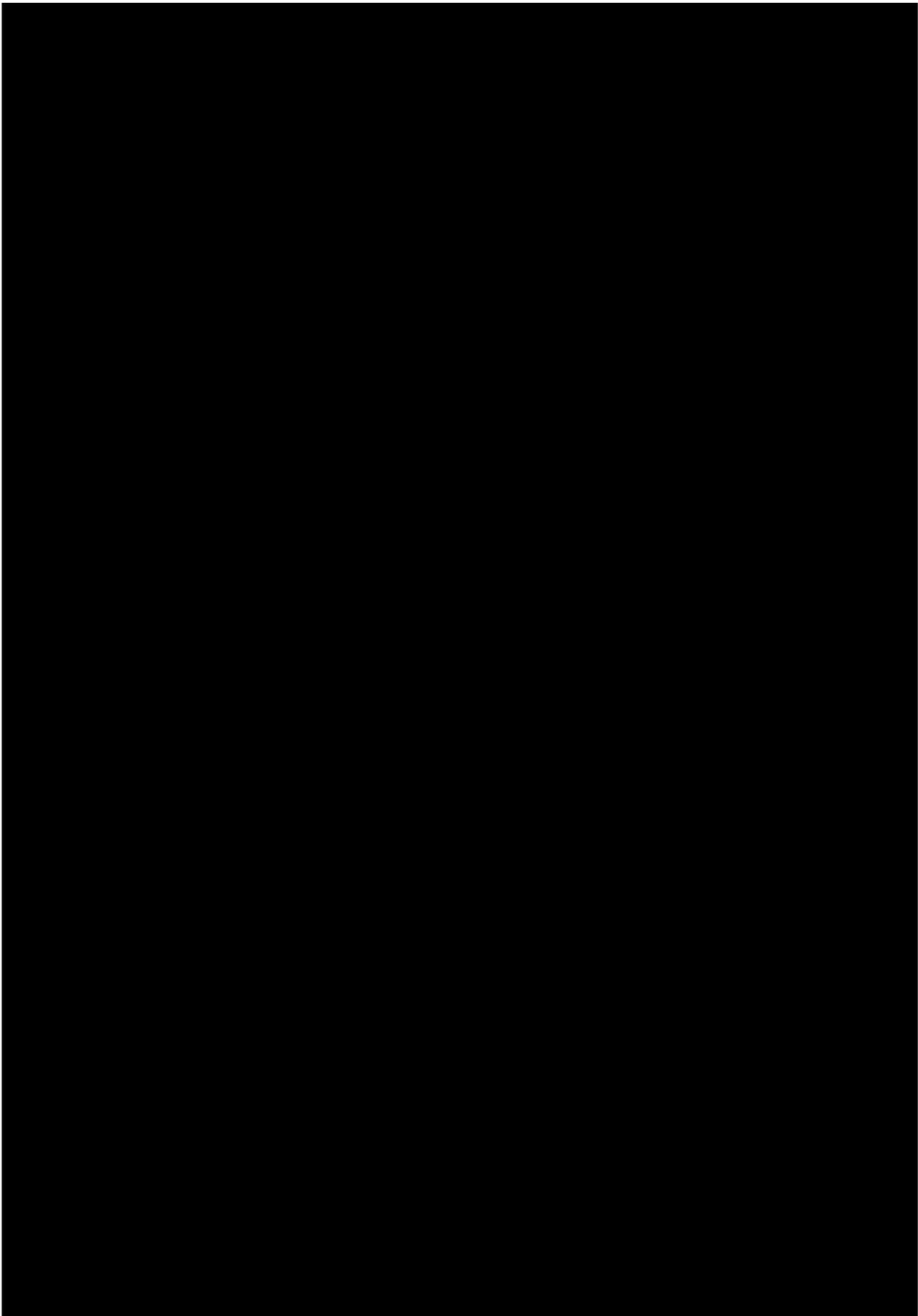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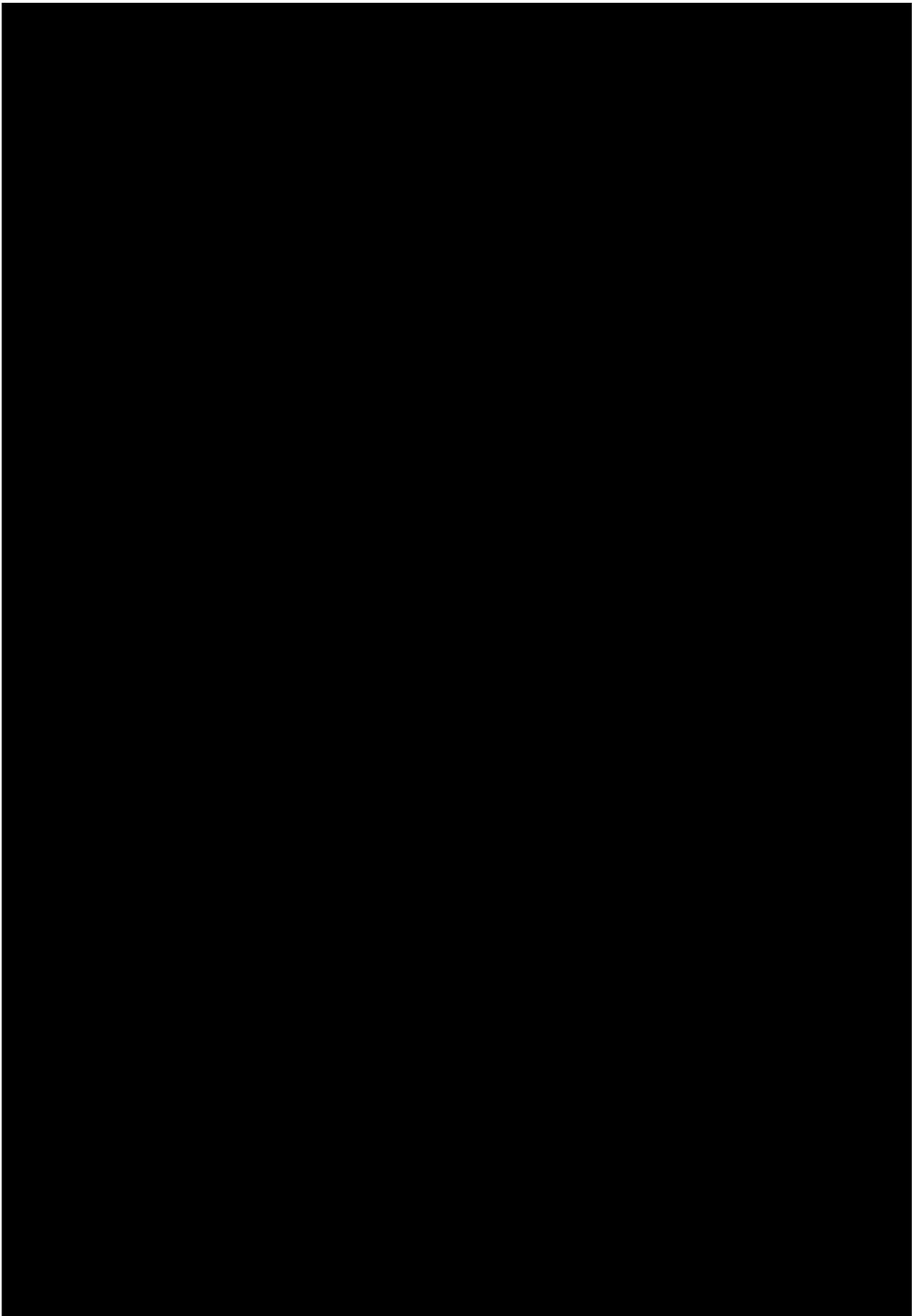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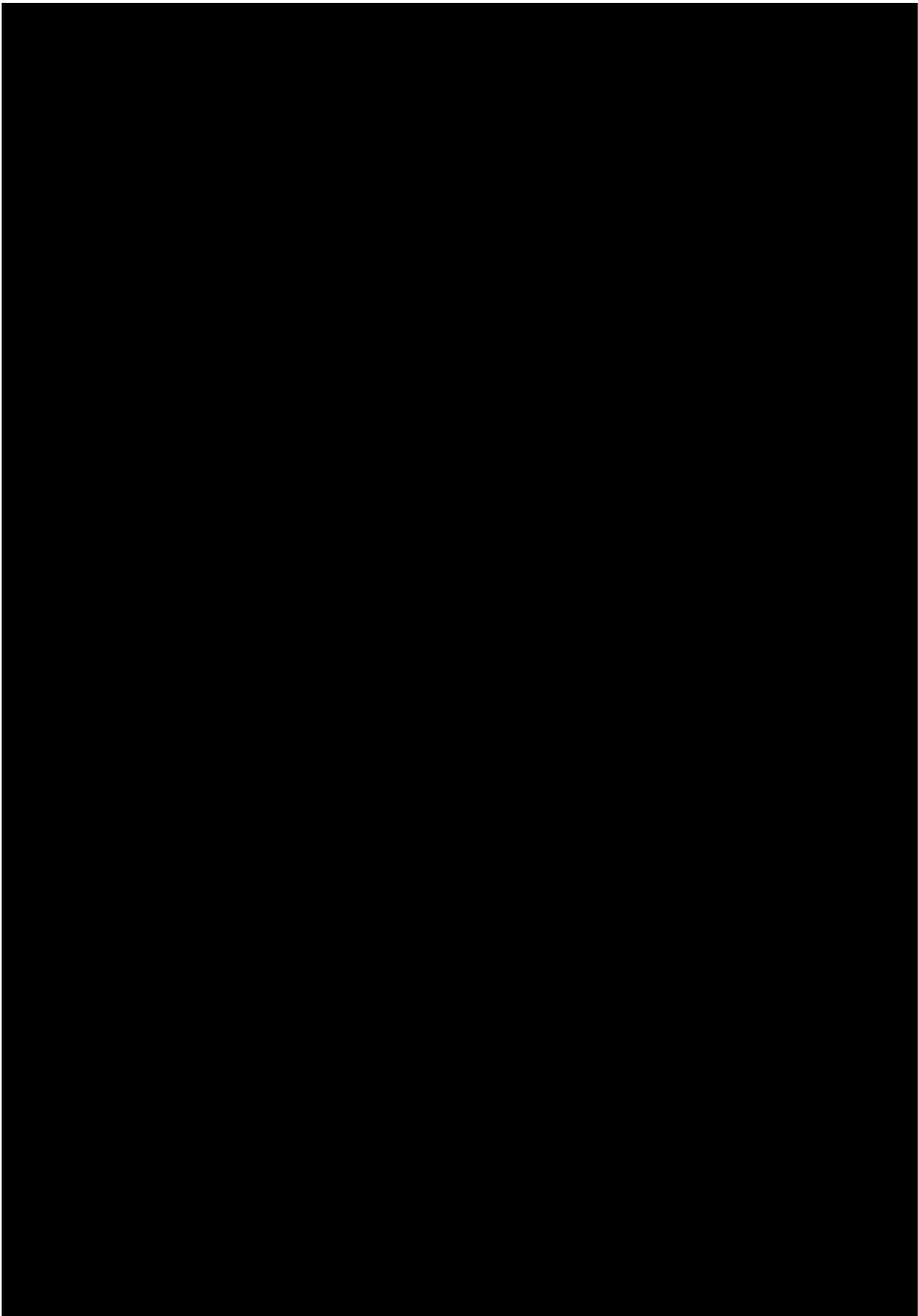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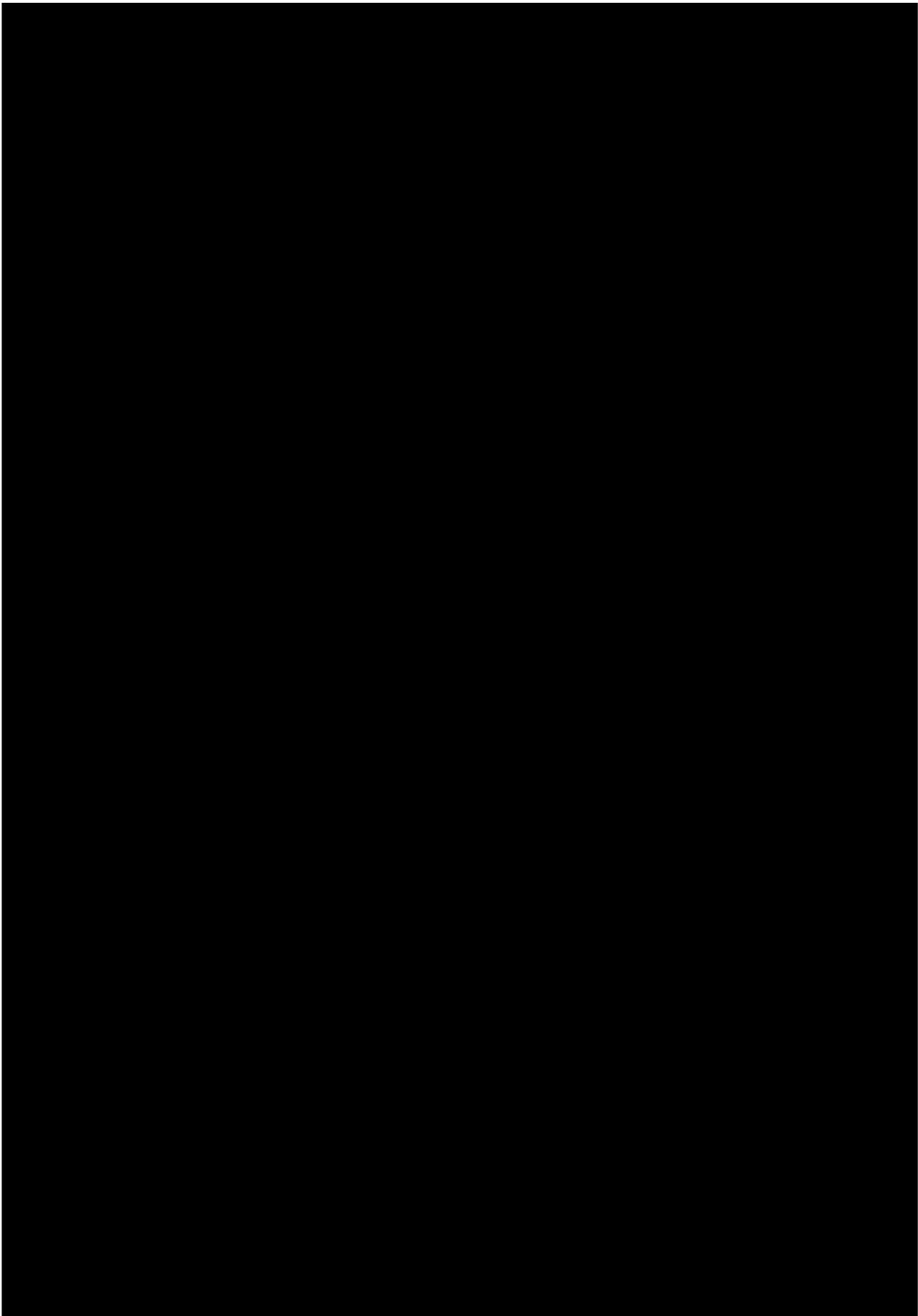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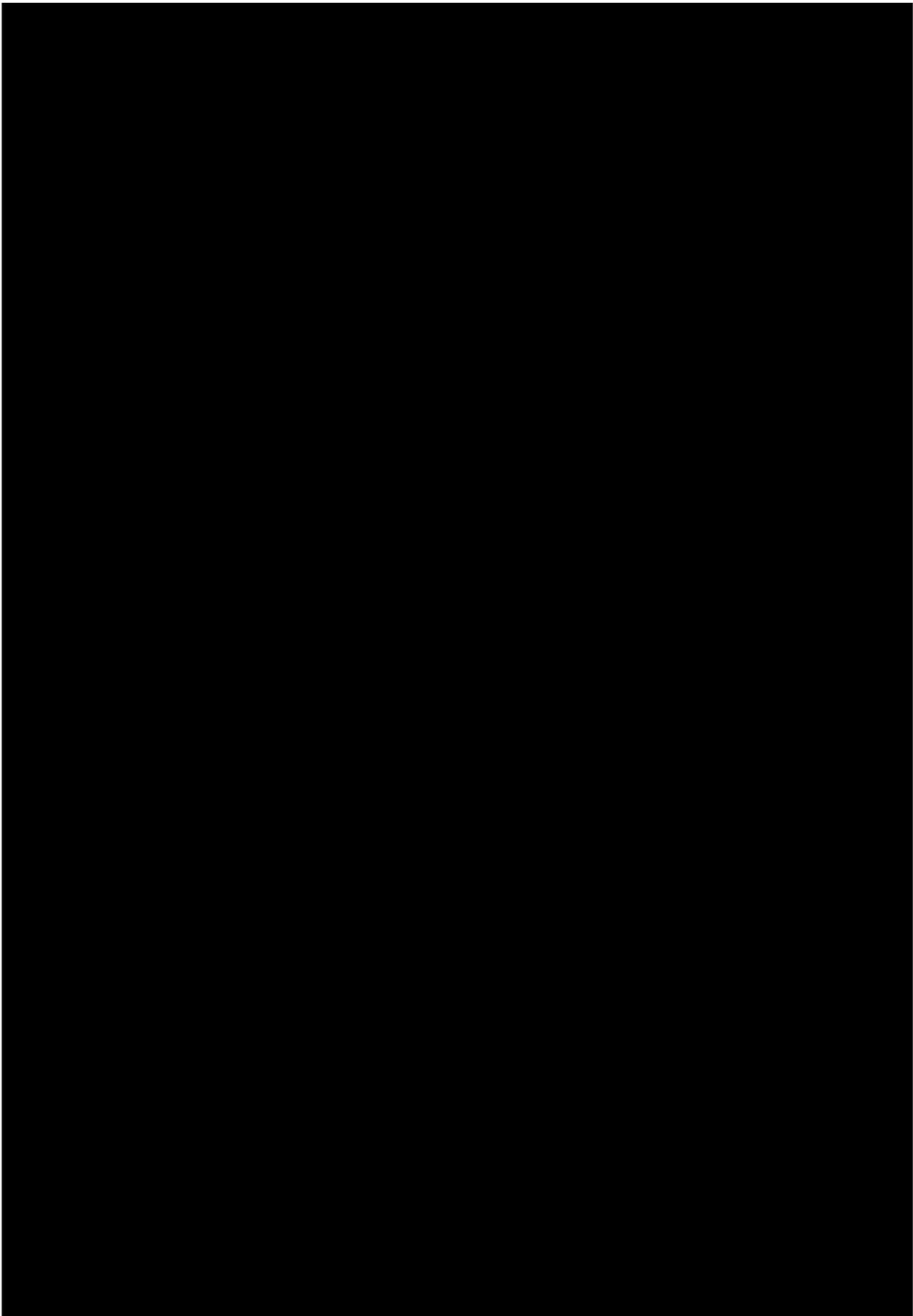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울촌 제1산단~울촌면소재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2. 5.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6. 11. 21.

여수시장 (인)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울촌 제1산단~울촌면소재지 간 도로개설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울촌면	조화리	48-6	답	5	5	여천군 울촌면 조화리 317	김상수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262-2	울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1-5	답	75	75	여천군 울촌면 조화리 402	서창화					
		62-10	구거	7	7	여천군 울촌면 조화리 108	박홍기					
		825-158	답	778	778*7128/24200	여수시 신월동 60 금호아파트 7-1302	추안지					
					778*4576/24200	여수시 주삼동 262-1	추순자					
					778*8624/24200	순천시 연향동 1345 대우아파트 104-1201	정순천					
		826-8	답	1,275	1,275	순천시 연향동 1628 호반리젠시빌 203-1703	박수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93(금광동)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	근저당권 지상권		
		826-10	답	1,287	1287*1/2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05-1 유창파크맨션 1-701	한훈주					
		826-10	답	1,287	1287*1/2	순천시 조례동 550 남양휴튼아파트 106-907	최인숙					
		279-4	도	10	10		미등기(1)	월산리	김광석			
280	도	23	23		미등기(2)	-	김현권					
합계		8필지			3,460㎡		9명		4명			

○ 물건 - 해당없음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6. 11. 21. ~ 2016. 12. 5.(14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 061-659-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하수개발·시공업 등록취소 공고

우리시 등록된 지하수개발·시공업 중 주된 사무실 이전 및 기술인력 변경 등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법 제25조제1항3호를 위반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여 수 시 장

등록취소 업체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등록주소	취소사유	비고
여수 제23호	(주)거성건설 박춘아	화산4길 73 (화장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22호	부건산업개발(주) 이종영	주동1길 42 (주삼동)	변경등록 미이행	자진반납
전남제143호	(주)인성 정성희	학동8길 17-1 (학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07호	세운개발(주) 이경태	한재로 119 (광무동)	변경등록 미이행	자진반납
전남제247호	(주)빌탑 김연주	안산5길 5-15 (안산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20호	(유)한영 이정우	여서1로 75 (여서동)	변경등록 미이행	자진반납
제2015-1호	(주)제이앤산업 한창호	화산1길 68-5(화장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06호	(주)마린코리아 박수경	예울마루로37-15, 402호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24호	수림조경개발(주) 황명선	새터로 91 (신기동)	변경등록 미이행	
전남제233호	(주)고산이앤씨 박기상	화산2길 58 (화장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09호	(주)주신건설 김명환	화산2길 58 (화장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01호	서진기술(주) 서진일	이순신광장로131-1(중앙동)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04호	한일지하수개발 염기훈	소라면 주삼덕양로3	변경등록 미이행	
제2010-1호	(주)마래 김근모	덕충동 233-1	변경등록 미이행	
여수 제24호	예림조경개발(주) 이영란	문수로 43 (문수동)	변경등록 미이행	
전남제172호	(유)남호건설 조연자	시전5길 3 (신기동)	변경등록 미이행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 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행정처분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유흥주점	기라성 (10-19호)	황☆란	여수시 오림4길 51 (오림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영업허가 취소 (2016.11.22)

4. 공고기간 : 2016. 11. 22 ~ 2016. 12. 9(17일간)
5. 고지사항 : 영업허가 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부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행정과 (☎ 061-659-4237)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92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30.53m	3m	100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용주리	492번지	30.53m	3m	100m ²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21.

여 수 시 장